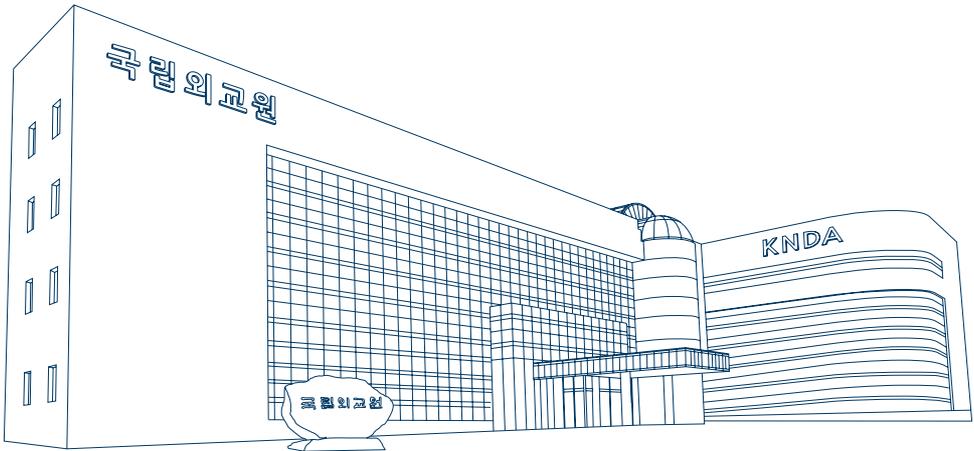


정책연구시리즈 2017-10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활동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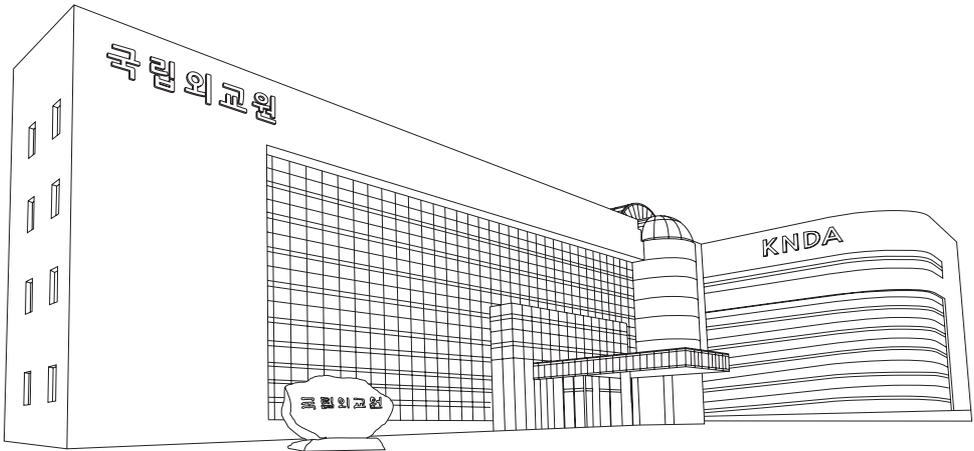
김동석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정책연구시리즈 2017-10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활동 연구

김동석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정책연구시리즈 2017-10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활동 연구

발 행 2018년 1월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 행 인 국립외교원장

주 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전 화 3497-7760 (代)

팩시밀리 571-1032

홈페이지 www.knda.go.kr
www.ifans.go.kr

디자인·인쇄 웃고문화사 (02-2267-3956)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비매품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10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활동 연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입안과 시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외 정책기조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연구시리즈』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목 차

요약	1
I. 서론	2
II. 아프리카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	3
III.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 사법처리 개관	7
1. 아프리카 지역 내 사법처리	7
2. 아프리카 지역 외 사법처리	9
IV. 아프리카와 국제형사재판소	12
V. 아프리카 연합의 사법처리 노력	18
VI. 정책적 고려사항	19
참고문헌	21

요 약

본 연구는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domestic trial) 활동을 다루고자 한다. 아프리카 대륙은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집단살해(genocide) 형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하였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차드 등은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반면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해 유럽 국가들, 유엔 특별법정 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아프리카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계는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ICC가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명시된 보편적 정의(universal justice)가 아닌 선택적 정의(selective justice)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한, 수단, 케냐의 현직 대통령 기소를 목격하면서, 현직 정부수반에 대한 면책특권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은 자체적인 사법처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의무를 지원하고 대(對)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의 사법처리 경험은 통일 이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I. 서론

탈식민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실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¹ 과도기 정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Transitional Justice Database Project)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총 96건의 인권유린 발생국 정부에 의한 사법처리(domestic trial)가 이루어졌다. 국제사회도 아프리카의 심각한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에 나섰다. 유엔(UN: United Nations)은 르완다 집단살해(genocide)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를 창설하여 2015년까지 운영하였다. 또한, 시에라리온 정부와 공동으로 시에라리온 내전 관련 인권유린 가해자 재판을 위한 시에라리온 특별법원(SCSL: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아프리카 지역의 전쟁범죄(war crime),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집단살해(genocide)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말리 등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반군 혹은 민병대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 일부는 형이 확정되었다.

심각한 인권유린에 연루된 전·현직 국가수반들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다. 코트디부아르의 전(前) 대통령인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는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단 의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대통령은 다르푸르(Darfur) 지역의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등의 혐의로 현직 국가수반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되었다. 최근 차드의 전직 대통령 이센 아브레(Hissène Habré)는 망명지인 세네갈 국내 법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종신형

1. 과도기 정의는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 무력충돌, 심각한 정치적 갈등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경험했던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아픈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Olsen, Payne, and Reiter 2010; 조정현 2014; 최철영 2012).

에 처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활동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즉 아프리카에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집단살해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프리카 지역 간 관계와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의 인권유린 가해자 사법처리 노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활동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아프리카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집단살해 형태의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로마규정(Rome Statute) 제7조에 따르면 반인도적 범죄는 민간인 혹은 민간인 집단을 향한 광범위한 혹은 조직적인 공격행위 차원에서의 살인, 말살, 노예화, 추방 혹은 강제이주, 국제법을 위반하는 투옥 혹은 다른 종류의 신체적 자유 박탈, 고문, 강간 또는 다른 형태의 성폭력, 인종, 종교, 문화 등에 따른 차별과 박해, 강제실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예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정책)를 의미한다(김영석 2014; Shaw 2014). 전쟁범죄는 제네바 협정(Geneva Conventions)의 심각한 위반행위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전쟁포로 살해, 민간인 혹은 전쟁포로에 대한 고문 혹은 비인간적인 대우, 불법적인 재산파괴 및 전용, 약탈, 소년병 징집, 불법적인 추방, 감금 혹은 강제이주, 강간 혹은 성노예, 즉결처형, 민간인 인질 잡기 등을 포함한다(김영석 2014; Shaw 2014).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는 상당 부분 겹치지만, 반인도적 범죄는 전쟁 중에서만 아니라 평화 시에도 저질러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엔 집단살해 협정(United Nations Genocide Convention)은 집단살해를 민족, 종족 혹은 종교집단 전체 혹은 부분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

행된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집단살해는 직접적인 살인행위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해를 입히는 행위, 희생자 집단의 파괴를 야기할 정도의 생활환경 악화, 출생 방지, 희생자 집단 어린이의 강제입양을 포함한다(김영석 2014; Shaw 2014).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서구세계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으로 신음하였다. 15세기부터 19세기 초·중반까지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납치해 강제로 신대륙으로 이주시켜 노예로 팔았다. 강제이송과정에서 1,000만~2,0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² 19세기 서구 국가들은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많은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 현 콩고민주공화국 영토를 사유지로 삼은 벨기에의 레오폴드 1세가 고무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700만 명 이상 콩고인들이 목숨을 잃었다.³ 벨기에는 고무 채취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도주를 시도하다 잡힌 많은 원주민의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세기 초 나미비아(Namibia)를 식민화한 독일은 토착 헤레로(Herero)족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 헤레로족 구성원들을 무차별 학살하거나 사막 한가운데 방기하여 기아로 사망하게 만들었다. 독일에 의한 집단살해로 인해 헤레로족 전체 인구의 75%인 약 65,000명이 사망하였다.⁴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비교적 평화롭게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몇몇 식민지에서는 식민지배자와 반(反)식민 민족주의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식민지배자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였다.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는 알제리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 고문 등을 광범위하게 자행하였다. 10만 명 이상의 알제리인들이 프랑스의 군사작전으로 희생되었다(Valentino 2004; White 2010). 알제리 외에도 프랑스는 마다가스카르, 카메룬에서도 민족주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고문, 불법 구금, 즉결처형 등을 저질렀다. 1950년대 영국

2- White, Matthew. 2010. "Death Tolls for the Multicides of the Twentieth Century"
(<http://necrometrics.com/warstatx.htm>)

3- Ibid.

4- Ibid.

은 케냐에서 독립운동 세력인 마우 마우(Mau Mau) 지지자로 의심되는 민간인 학살, 강제이주, 집단수용소 수용과 같은 인권탄압을 자행하였다.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독립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서구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아프리카 대륙은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집단살해(genocide)가 발생하였다. 독립 직후 르완다의 후투족 정부와 투치족 게릴라들은 상대방 종족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 정부와 민병대가 약 80만 명의 투치족 국민과 온건한 후투족 국민을 학살하였다. 수단 정부와 아랍계 잔지위드(Janjeweed) 민병대는 2000년대에 다르푸르 지역에서 약 30만 명의 원주민을 학살하였다. 국제사회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남수단의 딩카(Dinka)족과 누에르(Nuer)족 간 폭력사태가 집단살해에 도달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단살해와 더불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집단 살해(politicide)도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 지도자인 멩기스투(Mengistu)는 집권 후 레드 테러(Red Terror)라 불리는 반대세력에 대한 잔인한 숙청을 전개하였다. 1974년부터 1991년까지 100만 명 이상이 레드 테러로 희생되었다. 우간다의 이디 아민(Idi Amin)은 집권 기간 동안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정치적 반대세력의 일원으로 규정하여 살해하였다. 1980년대 차드의 아브레 대통령은 재임 중 반정부 세력 제거 차원에서 4만여 명을 학살하였다.⁵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전쟁인 내전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보편적인 전쟁 형태다. 2000년대 중반부터 내전의 수가 감소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국가의 삼분의 일 이상이 내전에 시달렸다. 내전은 종종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를 야기하였다. 내전 중에 정부군 혹은 반정부 무장단체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생활터전을 파괴하였다. 특히 반군이 게릴

⁵- Ibid.

라 전술을 펼치면서 정부가 반정부 무장단체원을 제대로 색출하지 못할 때, 정부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종종 발생하였다(Valentino 2004; Valentino, Huth and Balch-Lindsay 2004). 또한, 반정부군은 민간인들의 이탈을 막고 전투를 지속하기 위해 학살을 저질렀다(Kalyvas 2006; Wood 2010). 말리,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등에서 내전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몇몇 국가에서 전쟁 당사자들이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강간(rape)을 적의 사기를 꺾고 수치심을 안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들은 여성에 대한 강간을 광범위하게 자행한 거로 악명이 높다. 또한, 많은 내전 당사자들이 소년, 소녀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등에서 반정부 무장단체들이 소년, 소녀들을 납치하여 강제로 전투에 참여시켰다. 소년들은 전투병 혹은 전투지원병으로, 소녀들은 요리, 청소 혹은 성노예로 동원되었다.

독립 이후 1980년대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독재체제가 만연하였다. 이 시기 일부 독재자들은 반정부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였다.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 세세 세코(Mobutu Sese Seko), 우간다의 아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장베델 보카사(Jean-Bédel Bokassa), 적도기니의 테오도로 응구에마 오비앙(Teodoro Nguema Obiang) 등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암살, 고문, 투옥을 주도했으며,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였다. 1994년 흑인 정부 출범 이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지도자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강제하여, 흑인과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억압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카메룬, 에리트레아, 부룬디, 수단 등의 지도자들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면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유지 혹은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에서의 정치적 억압이 반인도적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Ⅲ.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 사법처리 개관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 사법처리는 사법처리의 주체를 기준으로 지역 내 사법처리와 지역 외 사법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내 사법처리는 인권유린이 발생한 해당국 정부가 단독으로 혹은 아프리카 연합과 같은 지역 기구의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반면 지역 외 사법처리는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유럽 국가 등 아프리카 밖의 국가 혹은 국제기구에 의해 진행되었다.

1. 아프리카 지역 내 사법처리

아프리카 지역 내 사법처리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정부 지도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세력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사법처리를 단행하였다. 즉 인권유린 가해자를 정권유지의 장애물로 인식하여,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정권에의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권유린 피해자들에게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을 경우, 피해자들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한 정의실현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 지도자가 지지층을 만족시켜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단행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인권유린 가해자 세력의 힘 혹은 영향력이 쇠퇴했을 때 주로 나타났다(Kim 2012). 전쟁에서의 승리 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경우 가해자 세력이 와해되어 이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인권유린의 정도가 심할수록 피해자들의 정의실현 요구가 커져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차드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91년 멩기스투 공산정권을 타도한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의 에티오피아 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정부는 멩기스투 정부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단행하였다. 1994년 멩기스투를 포함한 73명의 전직 고위정부 관료, 군 고위인사 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였다(Dancy, et

al. 2014). 2007년 멩기스투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강제이주, 강제실종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는 짐바브웨에 멩기스투의 송환을 요청하였다. 나머지 공산정권 인사들도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고문 등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 무기징역 혹은 유기징역형에 처해졌다. 멩기스투 집권 시절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처벌은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2000년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실장과 3명의 대통령 경호원이 살인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종신형 혹은 15년 징역형에 처해졌다(Dancy, et al. 2014). 2005년에는 전직 국가 공공서비스 장관과 범죄수사 수장이 고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다.

1994년 후투족 지도자에 의한 집단살해 발생 이후 정권을 잡은 르완다 애국전선(RPF: Rwandan Patriotic Front) 정부는 집단살해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단행하였다. 1994년 육군 소장 니라하키지마나(Anne Marie Nyirahakizimana)를 키갈리(Kigali)와 기타라마(Gitarama) 행정구에서 자행된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 사법처리의 시작이었다. 이후 1990년대 수백 명의 르완다인들이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주도하거나 혹은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Dancy, et al. 2014). 2000년대 들어서도 집단살해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계속되었다. 2001년 르완다 사법부는 1,000명 이상을 집단살해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2003년에는 200명 이상을 집단살해와 이에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 가담혐의로 사법처리하였다(Dancy, et al. 2014). 2008년 4명의 르완다 군인들을 집단살해 관련 살인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투치족 정부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진행속도가 느리다고 비난하면서, 많은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벌을 위해 전통문화에 근거한 가차차(Gacaca) 법원을 운영하였다.

시에라리온과 차드에서는 내전 종료 혹은 정권교체 이후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원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002년 시에라리온 정부는 유엔과 공동으로 시에라리온 특별법원(SCSL)을 창설하였다. 이 법원의 목적은 시에라리온 내전(1991~2000) 중 발생한 전

쟁범죄 혹은 반인도적 범죄를 주도한 인사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었다. SCSL의 처벌 대상은 반군 지도자, 친정부 민병대 인사들, 전직 외국 대통령을 망라하였다. 내전 당시 잔인한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았던 혁명연합전선(RUF: Revolutionary United Front) 반군 지도자인 포다이 상코(Foday Sanko), 샘 보카리(Sam Bokarie) 등이 기소되었으며, 친정부 민병대의 지도자인 사무엘 힝가 노만(Samuel Hinga Norman)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베리아의 전(前) 대통령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도 시에라리온 특별법원에 의해 사법처리되었다(Dancy, et al. 2014). 망명지인 나이지리아에서 카메룬으로 월경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시에라리온 전쟁범죄들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50년형에 처했다.

차드의 독재자 이산 아브레는 1990년 실각 이후 세네갈로 망명하였다. 차드 법원은 2008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며 아브레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Dancy, et al. 2014). 그러나 차드 정부는 그가 해외망명중이어서 이 판결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지만 세네갈은 내정간섭을 이유로 회피해오던 아브레에 대한 사법처리를 2000년대 말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연합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특별법정(EAC: Extraordinary African Chambers)을 창설하였다. 2016년 EAC는 아브레의 재임 당시 강간, 성노예, 반체제인사 4만 명의 학살 명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2. 아프리카 지역 외 사법처리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해당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냉전 시대 국제사회는 주권불가침의 규범을 존중하여 아프리카의 인권유린이라는 국내문제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 존중이 세를 얻게 되면서, 인권유린 방지가 국제사회의 의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서는 주권존중의 원칙 침해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형성되었다. 르완다 집단살해 방지의 실패는 이러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전반적인 국가역량 취약은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해 효율적인 사법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은 평화정착, 정권안정 등을 명분으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서구 국가들이 반서구 성향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처벌하기 위해 사법처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아프리카 지역 외 사법처리는 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을 적용하는 유럽 국가들, 유엔 특별법정 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행해졌다.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은 타국에서 발생한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와 같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보편관할권을 견지하고 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자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고 있는 인권유린 가해자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겼다. 아프리카인 가해자들 대부분은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1994년 벌어진 집단살해와 이에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 혹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르완다인들에 대한 22건의 재판을 진행하였다(Dancy, et al. 2014). 이 중 일부는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예를 들어 2002년 벨기에 법원은 두 명의 르완다 출신 사업가들의 전쟁범죄 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각각 징역 10년, 12년형을 선고하였다. 2006년 네덜란드 법원은 후투 민병대 인테라함웨(Interahamwe) 조직원인 조셉 음팜바라(Joseph Mpambara)를 1994년 투치족 집단살해 관련 고문과 인질극 혐의로 기소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Dancy, et al. 2014).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인권유린 가해자들도 유럽 국가들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98년 네덜란드는 민주 콩고 전직 정부 관료인 세바스티앙 은자팔리(Sebastien Nzapali)를 고문 행위로 기소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2000년 벨기에 사법부는 당시 민주 콩고 외교부 장관인 압둘라예 은돔바시(Abdoulaye Ndombasi)를 콩고 내전 중 저질러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였다(Dancy, et al. 2014). 이는 외교부 장관으로 면책

권을 갖는 타국 인사의 처벌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민주 콩고와 벨기에 간 갈등을 일으켰다. 유럽 국가들의 보편관할권 행사 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결의에 의해 설치된 임시 국제형사재판소는 르완다의 집단살해 관련 인권유린을 심판하였다. 1994년 유엔 안보리 결의 955호에 의해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가 탄생하였다. 이 재판소의 목적은 1994년 르완다 내전에서 발생한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2015년까지 ICTR은 95명의 가해자를 기소하여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고, 이 중 6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관할하는 상설재판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말리, 수단,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리비아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 재판소는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반군과 민병대 지도자들을 기소하였고, 일부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 지도자인 장 피에르 뱌바(Jean-Pierre Bemba), 토마스 루방가(Thomas Lubanga), 제르망 카탕가(Germain Katanga)와 말리의 안사르 딘(Ansar Dine) 조직원인 아메드 알-마흐디(Ahmed al-Mahdi)는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CC는 전직 국가수반뿐만 아니라 현직 국가수반도 수사 대상으로 간주한다. 코트디부아르의 전직 대통령인 로랑 그바그보는 2011년 내전 중 발생한 살인, 강간 및 기타 성폭력, 박해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단의 현 대통령인 오마르 바시르는 다르푸르 지역에서 자행된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지휘 혐의로 ICC에 의해 기소되었다. 케냐의 케냐타(Uhuru Kenyatta) 현 대통령과 루토(William Ruto) 현 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직후 발생한 종족 간 폭력사태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다.

IV. 아프리카와 국제형사재판소

2002년 출범 당시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중 절반 이상인 33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기반인 로마규정에 비준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⁶ ICC 설립에 대한 아프리카의 지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였다. 첫째, 80만에서 100만여 명이 희생당한 르완다 집단살해를 목격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의 재발을 방지할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아프리카인들은 ICC의 강력한 처벌이 잠재적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인권유린 책임자 단죄는 해당국의 내전 재발과 민주주의 고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할 수 있다. 둘째,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보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의 침략방지를 보장할 국제기구가 필요하였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할 범죄에 침략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였다(Mbaku 2014). 즉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가 국제무대에서 강대국들의 횡포와 침략을 제어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표 1〉 국제형사재판소 공식조사와 예비조사 현황

	대상 국가
공식조사 중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2), 코트디부아르, 수단(다르푸르), 콩고민주공화국, 조지아, 케냐, 리비아, 말리, 우간다
예비조사 중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코모로, 기니, 이라크,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예비조사 종료	온두라스,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출처: <https://www.icc-cpi.int/Pages/Main.aspx>

6.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가 로마규정을 비준하였다. 출처: <https://asp.icc-cpi.int>

〈표 2〉 국제형사재판소의 아프리카 공식조사 진행 상황

	공식기소 건수	재판진행 수	무죄판결 수	유죄판결 수
콩고민주공화국	6	1	2	2
우간다	5	1	0	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	6	0	0
수단 (다르푸르)	7	1	1	0
케냐	9	0	6	0
리비아	5	1	0	0
코트디부아르	3	2	0	0
말리	1	0	0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II	0	0	0	0
부룬디	0	0	0	0

출처: <https://www.icc-cpi.int/Pages/cases.aspx>

하지만 아프리카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계는 해가 지날수록 악화하고 있다. 즉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ICC가 로마규정에 명시된 보편적 정의(universal justice)가 아닌 선택적 정의(selective justice)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Mbaku 2014). 즉 국제무대에서 힘이 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유린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연루된 인권유린은 외면한다는 것이다(Mbaku 2014). 2002년 창설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들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표1 참조). 현재 수단,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리비아, 말리, 우간다에서 발생했던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조사대상이다. ICC에 의해 기소된 39명 모두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다. 심지어는 현직 국가수반인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과 케냐의 케냐타 대통령도 반인도적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강대국이 연루된 비(非)아프리카 지역 인권침해 문제들(예: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ICC의 이러한 태도를 신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한다(Mbaku 2014). 즉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과거 백인 식민지배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아프리카를 재식민지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올해 2월 권좌에서 물러난 감비아의 야야 자메(Yahya Jammeh)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를 국제백인재판소(International Caucasian Court)라고 조롱하면서, ICC 탈퇴를 선언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유럽 국가들의 보편관할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첫째,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보편관할권 행사가 내정불간섭을 기본으로 하는 주권불가침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내정불간섭은 탈식민 아프리카 외교정책의 철칙이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아프리카인들이 외침의 위협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의 보편관할권은 이러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깨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둘째,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럽 국가들이 과거 자신들이 자행했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인권유린을 단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 예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고무 테러(Rubber Terror)를 자행하여 700만 명 이상의 토착민들을 살해하고, 르완다에서 종족분쟁의 씨앗을 뿌린 벨기에가 민주 콩고, 르완다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식민지 지배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 독재 등에 책임이 있는 만큼,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인권유린 행위를 심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즉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없는 보편관할권 행사는 유럽의 위선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단 알-바시르 대통령 기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첫째, 알-바시르 기소가 현직 국가수반에 대한 외교적 면책권(diplomatic immunity)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du Plessis, Maluwa and O'Reilly 2013). ICC에 의해 기소된 외국 정부 지도자에 대한 체포의무가 현직 지도자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법과 상충된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현직수반에 대한 사법권 행사가 자신들의 외교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AU 정상회의 참석차 자국을 방문하였을 때, ICC의 체포요구를 현지 정부수반에 대한 면책특권을 내세워 거부하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면서, 흑인 정부 등장 이후 진전된 국제인권에 대한 관심이 후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ICC의 알-바시르 기소가 수단의 평화와 화해 도모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프리카 연합이 다르푸르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ICC의 체포위협은 현 수단 지도층의 위기 종결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앤다는 것이다. 즉 수단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위협을 느껴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의 길로 가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du Plessis, Maluwa and O'Reilly 2013).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정적 시선을 완화할 두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서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의 파투 벤수다(Fatou Bensouda)를 검사장(Chief Prosecutor)으로 임명하였다. 이를 통해 ICC가 신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태도를 지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둘째,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다(Branch 2017). 2016년 ICC는 2015년 발발한 조지아와 러시아 간 전쟁 동안 자생한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조사를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비(非)아프리카 지역의 인권유린도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 두 조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되돌리는 데 실패하였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 탈퇴를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감비아는 로마규정으로 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종식 이후 아프리카에서 인권의 선진국이라 불리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탈퇴는 대내외적으로 충격파를 던졌다. 2017년 야하 자메가 퇴진하고 들어선 감비아의 민주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입장을 번복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등법원은 정부의 로마규정 탈퇴 통지가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철회하였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지도자들은 여전히 로마규정 탈퇴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룬디는 피에르 은쿠룬지자(Pierre Nkrunziza) 대통령의 삼선(三選) 전후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를 천명하자 탈퇴를 선언하였다.

케냐, 나미비아 등도 국제형사재판소 탈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케냐는 현직 케냐타 대통령과 루토 부통령이 2007년 선거 후 폭력사태 관련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서 ICC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비록 ICC가 케냐 정부의 비협조로 인한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케냐타와 루토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였지만, 케냐 정부의 ICC에 대한 반감이 로마규정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가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국제형사재판소 탈퇴를 고려하거나 추진할 전망이다.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늘어났지만, 이러한 흐름을 비판적으로 보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시민들이 존재한다.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이들 국가는 국내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은 로마규정 탈퇴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처벌 혹은 방지할 도구를 제거하여, 아프리카의 민주화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감비아의 민주 정부 등장 이후 탈퇴 입장 번복은 민주주의 추진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의 판결은 민주국가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인권유린 피해자, 시민사회, 반정부 세력도 국제형사재판소 탈퇴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 사법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임을 강조한다. 국제형사재판소 탈퇴는 인권유린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문화(culture of immunity)를 고착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NC 지도층이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의사를 밝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가 등장하였다. 저명한 반아파르트

헤이트 운동가이며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수장을 지낸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주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로마규정을 탈퇴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Mbaku 2014). 20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요청 목살은 야당과 시민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올해 초 고등법원은 정부의 ICC 탈퇴 진행을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국가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ICC 탈퇴 움직임에 비판적인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리카의 인권유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는 당사국(state party), 유엔 안보리, 재판소의 소추관(prosecutor)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김영석 2014). 로마규정 당사국은 ICC의 소추관에게 인권유린 사건을 회부하거나 혹은 ICC의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범죄가 발생한 영토 국가 혹은 범죄혐의자의 국적·국가가 규정당사국이거나 ICC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한 국가여야 한다. 유엔 안보리도 특정국의 인권유린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ICC는 범죄가 발생한 영토 국가나 범죄인의 국적·국가가 규정당사국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이들 국가의 동의 없이도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김영석 2014).

비판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 중인 아프리카 인권유린 사건의 대부분은 인권유린이 발생한 국가 혹은 유엔 안보리에 의한 회부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한다(Keppler 2011).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의 인권유린 사건들은 해당 정부가 ICC에 자발적으로 조사를 요청하였다. 수단의 다르푸르와 리비아 사건은 유엔 안보리의 요청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를 개시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이 자의적으로 조사를 결정한 경우는 케냐, 코트디부아르, 부룬디의 사건들뿐이다(Keppler 2011). 이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의도적으로 아프리카를 표적으로 삼고 선별적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신식민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V. 아프리카 연합의 사법처리 노력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의 보편관할권에 대한 반감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하였다. 2000년 벨기에는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민주 콩고의 당시 외무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2008년 독일은 르완다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에 대한 프랑스의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프랑스는 그에게 1994년 하비야리마나(Habyarimana) 전(前)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 추락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혐의를 씌웠다(du Plessis, Maluwa and O'Reilly 2013). 카가메 대통령은 이를 유엔에서 이슈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에 의한 보편관할권 남용을 지적하였다. 즉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편관할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연합은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열린 2009년 제13차 연례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du Plessis, Maluwa and O'Reilly 2013; Murithi 2013). 아프리카 연합은 알-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다르푸르에서의 평화협상을 망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다수의 현직 정치 지도자들이 ICC의 관할권에 놓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du Plessis, Maluwa and O'Reilly 2013; Murithi 2013). 2010년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연합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Keppler 2012). 마침내 2017년 2월 아프리카 연합은 회원국들에 국제형사재판소 탈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Branch 2017).

아프리카 연합은 자체적으로 역내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아프리카 정의인권법원(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에 착수하였다. 2010년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는 아프리카 정의인권법원의 관할권에 국제범죄를 첨부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즉 이 법원이 관할할 수 있는 범죄에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테러리즘, 해적, 부패를 집어넣는 것이다. 2012년 5월 아프리카 국가법 전문가들과 법

무장관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 초안을 검토하여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아프리카 연합 총회가 이 법안을 채택하는 과정이 남아있다(du Plessis, Maluwa and O'Reilly 2013; Murithi 2013).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국가들의 보편관할권 남용에 대한 우려, 세네갈의 차드 전(前) 대통령 아브레 기소 과정의 지체, 아프리카 민주주의, 선거, 거버넌스에 관한 헌장(African Charter on Democracy, Elections and Governance) 제25조 5항의 정부의 반헌법적 교체를 국제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충족시킬 필요에 기인한다(du Plessis, Maluwa and O'Reilly 2013; Murithi 2013). 하지만 아프리카 정의인권재판소의 강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동시에 아프리카 연합은 각 국가의 인권유린 관련 사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은 회원국의 사법체계 개선 없이는 미래에도 ICC의 아프리카에 대한 선별적 정의추구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회원국의 인권유린 사법처리 지원을 통해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정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ICC가 아프리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를 희망한다. 현재 아프리카 연합의 지원으로 세네갈의 아프리카 특별법정은 차드의 전 대통령인 이산 아브레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연합은 세네갈의 사법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ICC와 유럽 국가들의 아브레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개입 여지를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VI. 정책적 고려사항

2000년대부터 아프리카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는 대(對)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는 아직 개발 원조, 자원개발, 무역 등 경제적 교류에 치중해 있다. 아프리카 지역과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분쟁방지 및 해결, 인권 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의무를 지원하고 대(對)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사법부 역량 강화는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사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법원 행정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사법부 관계자 연수 및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사법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연합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정의인권법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법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혹은 인력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와 같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있어 함의를 지닌다. 남북한 통일 이후 심각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과거 북한 정권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문제를 정의실현 차원에서 처벌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이러한 처벌이 북한 엘리트 출신들의 반감을 일으켜, 통일 과정에서 이들의 협조를 얻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진실위원회를 통한 용서와 화해를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처벌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과거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문제를 회부하느냐 아니면 통일한국 자체적으로 북한의 구엘리트들을 처벌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사례는 통일 이후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 사법처리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석. 2014.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 김형구. 2008.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현황 및 전망: 관할권 행사와 국내적 사면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27호: 53-83.
- 김형구. 2010. “국제형사재판의 현황과 한계: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1권 1호: 377-396.
- 장석영, 조정현. 2015. “국제형사법원의 변화 추세와 전망: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s)와 혼합재판소(hybrid courts)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0권 3호:197-221.
- 조정현, 2014. “과도기 정의와 한반도 통일.”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호: 25-42.
- 최철영, 2012. “한·일과거사 청산과 이행기 정의 개념 적용.” 『성균관법학』 제23권 2호: 237-261.
- Bikundo, Edwin. 2011.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Africa: Exemplary Justice.” *Law and Critique* 23(1): 21-41.
- Bosco, David. 2014. *Rough Justic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a World of Power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pman, Terrence L., and Stephen Chaudoin. 2013. “Ratification Patter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7(2): 1-10.
- Clarke, Kamari Maxine. 2009. *Fictions of Justic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Challenge of Legal Pluralism in Sub-Saharan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cy, Geoff, Fancesca Lessa, Bridget Marchesi, Leigh A. Payne, Gabriel Pereira and Kathryn Sikkink. 2014. “The Transitional Justice Research Collaborative: Bridging the Qualitative-Quantitative Divide with New Data.” Available at www.transitionaljusticedata.com
- Du Plessis, Max. 2008.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ts Work

- in Africa: Confronting the Myth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Papers 173.
- Du Plessis, Max. 2010.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at Africa Want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Monographs 172.
- Du Plessis, Max, Tiyanjana Maluwa and Annie O’Reilly. 2013. “Afric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hatham House International Law 2013/1: 1-13
- Jalloh, Charles C., Dapo Akande and Max Du Plessis. 2011. “Assessing the African Union Concerns about Article 16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frican Journal of Legal Studies* 4(1): 5-50.
- Jo, Hyeran and Beth A. Simmons. 2016. “Ca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ter Atroc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70(3): 443-475.
- Kalyvas, Stathis. 2006.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ppler, Elise. 2012. “Managing Setbacks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Africa.” *Journal of African Law* 56(1): 1-14.
- Kim, Hunjoon. 2012. “Structural Determinants of Human Rights Prosecution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49(2): 305-320.
- Kim, Hunjoon and Kathryn Sikkink. 2010. “Explaining the Deterrence Effect of Human Rights Prosecutions for Transitional Countr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4): 939-963.
- Mills, Kurt. 2012. “Bashir is Dividing Us”: Afric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uman Rights Quarterly* 34: 404-447.
- Muller, Susanne D. 2014. “Keny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Politics, the Election and the Law.” *Journal of Eastern African Studies* 8(1): 25-42.
- Murithi Tim. 2013. “The Afric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 Court: An Embattled Relationship?” Institute for Justice and Reconciliation (IJR) Policy Brief No. 8.
- Mutua, Makau. 2010.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Afric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Norwegian Peacebuilding Center Working Paper (September).
- Nouwen, Sarah M. H., and Wouter G. Werner. 2010. “Doing Justice to the Politica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Uganda and Suda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4): 941-965.
- Olsen, Tricia D., Leigh A. Payne and Andrew G. Reiter. 2010. “Transitional justice in the world, 1970-2007: Insights from a new dataset.” *Journal of Peace Research* 47(6): 803-809.
- Roht-Arriaza, Naomi and Javier Mariezcurrena (eds). 2006. *Transitional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bas, William A. 2013. “The Banality of International Justic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11(3): 545-551.
- Shaw, Malcome N. 2014. *International Law (Seven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eff, Michelle and Leslie Vinjamuri. 1999. “Reconciling Order and Justice? New Institutional Solutions in Post-Conflict States.” *International Affairs* 52(2): 757-779.
- Sieff, Michelle and Leslie Vinjamuri. 2006. “Prosecuting War Criminals: The Case for Decentralisation.”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2(2): 103-113.
- Sikkink, Kathryn and Hunjoon Kim. 2013. “The Justice Cascade: The Origins and Effectiveness of Prosecu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9: 269-285.
- Simons, Beth A., and Allison Danner. 2010. “Credible Commitment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Organization*

- 64(2): 225-256.
- Snyder, Jack and Leslie Vinjamuri. 2003/04. "Trials and Errors: Principle and Pragmatism in Strategies of International Justice." *International Security* 28(3): 5-44.
- Valentino, Benjamin. 2004.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Twentieth Centu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Valentino, Benjamin, Paul Huth and Dylan Balch-Lindsay. 2004. "Draining the Sea: Mass Killing and Guerilla Warfar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 no.2:375-407.
- Vinjamuri, Leslie. 2010. "Deterrence, Democracy, and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Justice."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24(2): 191-211.
- Vinjamuri, Leslie and Jack Snyder. 2004. "Advocacy and Scholarship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War Crime Tribunals and Transitional Justi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7: 345-362.
- Vinjamuri, Leslie and Jack Snyder. 2015. "Law and Politics in Transitional Justi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8: 303-327.
- Wood, Reed. 2010. "Rebel Capability and Strategic Violence against Civilians." *Journal of Peace Research* 47(5): 601-614.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www.ifans.go.kr